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이 설치한 풍력발전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중앙매일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앙매일 :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면)

내 용 : 유성구청이 지난 5월, 갑천변에 설치한 풍
력발전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구청은 야간에 갑천변에서 조깅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

체 생산하는 가로등을 1본에 1천 3백만 원씩 총 1
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0본을 세웠다.

유성구에 앞서 중구가 중촌동 중앙고 뒤편 하상도
로변 공원에 세운 가로등 가격이 1주에 3백만 원~4
백만 원인데 비해 터무니 없이 고가인 유성구 풍력발
전 가로등은 그러나 풍력이 예상 기대치에 못미쳐 전
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 역
할만 하고 있다.

당초 설계도라면 프로펠라에서 발생하는 예상전력
은 400W로 가로등 1본의 공급가는 일반 가로등 가격
에 버금가는 270만 원이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
태이다.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
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
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
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 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중략)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풍력발전가로등을 설치 했
으나 시험결과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경관
가로등으로 변경해 설치했다”며 “사후조치 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9월 5일자 1면에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구 풍력발전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역할만 하고 있다. 가로등 설치업체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의 경관용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순수경관용으로 부착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설계는 전문업체의 용역설계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 입찰에 의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고 예산의 낭비 또한 없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말한 사실 또한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6년 9월 25일자 1면에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에서 유성구 풍력발전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역할만 하고 있다는 내용과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멘트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경관용으로 부착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설계는 전문업체에 용역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의뢰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낭비나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매일 2006년 9월 29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가로등 10분 가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전략) 학계는 지난달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하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출범했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연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된 17명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 인력 태반이 행정직 등으로 밀려난 게 이를 방증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정확한 인력 배치는 알지 못하지만 연구 인력중 전략기획실, 행정실, 교류홍보실에 각각 1~2명씩 배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사 문제를 시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9월 6일자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17명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 18명과 직원 9명을 전원 채용할 예정이고, 연구원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18명중 14명은 연구실에, 4명은 전략기획실 및 교류홍보실에 배치한 것”이며, 이는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9월 6일자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란 기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인력을 승계할 예정이고 연구원 18명 중 4명을 전략기획실·교류홍보실에, 4명을 1·3연구실에 배치한 것은 동북공정 문제에 학술 연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세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0월 1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사행성오락 관련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9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이종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재부 : 서울제5종재부
 접수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여야증진에 후원금 뿌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2일자 A1면)

내용 :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과 우상호 대변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 업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4~2005년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문화관광부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은 19개사 중 주요 주주 및 임원 명단이 공개된 일부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략)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같은 회사의 김OO 이사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지난 2006년 8월 22일자 1면 『여야증진에 후원금 뿌렸다』라는 제목으로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주)한국문화진흥의 김OO 이사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기사로서, 사실은 후원인 김OO은 이종걸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2005년 2월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주)한국문화진흥의 이사가 되었으므로 후원금 낼 당시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종걸 의원은 (주)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저희 조선일보는 허위기사로 인하여 이종걸 의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며 동시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의 8월 22일자 ‘바다이야기 관련 상품권업체들 후원금’ 기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2005년 2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이 김OO 이사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김OO씨가 (주)한국문화진흥 이사가 된 것은 금년 5월이므로 이 의원이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의 맨 앞부분에 2006년 10월 2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A2면)

내용 : <합의사항 참조> □

기획예산처가 왜곡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유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एं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A3면)

내 용 : 지난달 말 정부는 복지국가 청사진으로 ‘비전2030’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소개했다. 왜 하필, 세대가 바뀌는 24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인 2030년을 목표로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정부는 ‘비전2030’을 준비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 기간’을 묻는 질문에 2030년을 지적한 응답자는 24.4%였고, 67.4%의 응답자는 2015년을 선택했다. 10명중 7명 꼴로 당장 9년 뒤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을 만든 기획예산처 관련자에게 “왜 국민들이 원하는 2015년이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발표했느냐”고 물었더니,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한가지, KDI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만약 귀하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하고, ①미국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낮지만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②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

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67.8%가 2번을 선택했다.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이 늘더라도 복지 혜택이 많아지는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통계를 왜곡하면서 국민들에게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 반론보도문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8일자 A3면에 『एं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 2030』 제목으로 비전 2030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은 정작 2015년까지의 청사진을 원하였으나, 정부는 203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민이라는 특정상황을 전제로 한 선호도를 일반적인 선호도로 둔갑시켰으며, 유럽형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비전 2030 준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하자 없는 통계자료이며, 비전 2030 보고서는 특정 경제모델을 홍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2015년까지만의 비전을 제시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6년, 총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2015년을 포함하는 203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설문조사시 사용한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상황설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기술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9월 18일자 A3면 『엔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 2030』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비전 2030'은 KDI 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경제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만든 통계로 작성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경제섹션 2면에 2006년 10월 25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증전 쌍방 반론보도해 온 양식에 따라 게재하되, 제목은 본문활자크기보다 한 급수 큰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경산연)가 국내 제일의 숲체험장인 잣 향기 푸른 교실 조성으로 지난해 대상 지역 계곡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계곡일부가 장마에 유실되는 등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경산연에 따르면 '잣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나 관련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오탉수가 발생, 소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계곡 일부가 유실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산연이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가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아시아일보는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잣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관련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경산연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관련청의 점용허가를 몰라 못했으며,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가평군 산림조합은

신청인 조합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가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이○○)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

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산림조합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시 임야와 농경지에 피해가 극심한 황폐개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였으나, 본 사업의 사업지는 하천이 아닌 임야로 되어 있어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본 사업은 산림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방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가평군산림조합에서 실행하였기 때문에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산림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갯 향기푸른교실”과 관련하여 가평군산림조합은 사방사업을 시행할 자격을 갖춘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기관이며, “갯 향기푸른교실”사업과 관련한 토목공사는 관련법에 의해 하천 또는 산지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집중호우시 피해가 심한 계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일보> 사회면에 2006년 10월 20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연합회가 언론중재위에서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이사장 김○○)
2 김○○

피신청인 : 한국목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일
자 사설면)

내 용 : 본보 7월 1일자에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자원재활용업연합회의 회장은 명예훼손과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이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나 연합회를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들어 편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사는 이 점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 취하해 일단락했다.

자원재활용업연합회 측은 정당한 홍보활동이었다고 하지만 방문 받은 제재소에서는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본사의 취재확인을 통해서도 다분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증을 가슴에 착용하고 들어간 사실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권이 있는 자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보이게 달고 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고 한강구역 환경청 담당자는 밝혔다. 이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본사의 취재가 모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범지식과 언행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홍보하는 연합회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권이 분명히 있는 이 단체는 홍보활동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라면 다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사설면에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목으로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보 7월 1일자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대상은 아니다’, ‘재활용업연합회는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취하했다’,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권이 분명히 있는 이 단체는 홍보활동

에 좀 더 신중하게 활동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내용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며 연합회가 반론보도문 보도에 합의한 적은 있으나 취하 대상이 되는 내용(민, 형사상 책임 포함)도 없을뿐더러 취하한 사실도 없으며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이권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8월 1일자 오피니언면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청구한 기사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로 합의 취하되었고, 연합회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재위원회에서 연합회가 신청한 조정대상 기사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재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사설란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보도와 링크시킨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

청구와 목재신문 7월 1일자 1면 “인천 제재업체...” 제하의 기사 및 8월 1일자 사설 “재활용업연합회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관련된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6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썹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농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8면)

내 용 :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해썹(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일 발

기인대회를 마친 다음 25일 총회 및 이사 선임을 마무리해 해썹기준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한 축산단체장이 농가 부담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20일 발기인 서명을 미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최근 기준원장 연봉의 과다 책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략)

또 농림부가 해썹기준원 설립 때까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축산단체에 2,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농민신문은 지난 9월 27일자 8면에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목으로 해썹기준원 설립에 대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해썹기준원은 '04년 7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시 해썹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해썹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썹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의 담당인력으로는 해썹지정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전담 조직을 통하여 수행키로 하고 “(가칭) 축산물해썹기준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설명회, 준비인 모임, 발기인 모임 등을 주선하였고 축산단체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해썹 지정비용, 기준원장 연봉 등은 책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썹기준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임 외에도 관계기관과 축산단체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단법인의 주체는 회원이며, 회원들이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썹 지정비용과 급여 등도 이런 절차를 걸쳐 확정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축산물해썹기준원은 창립되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관 등 규정이 의결되었고 기준원장도 선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항의 결정은 회원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썹기준원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및 연구검토 내용,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취재 보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농민신문> 2006년 10월 31일자 이전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보도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안전성 향상 주도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9면)

내 용 : 농림부가 18일 사단법인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정식 허가하면서,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썹기준원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해썹 지정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 6월 해썹기준원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9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18일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순께로 예상되는 농림부의 지정 고시 절차만 마무리되면,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주요 사업으로 해썹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썹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펼치고 기타 기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해썹이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계기로 사육·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위생과 안전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썹기준원은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부는 축산물 해썹기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